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어장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양식품종별로 어장청소의 주기 및 방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, 어장정화정비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선박운용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양식종류·방법·품종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(안 제12조, 안 별표3)

양식면허의 종류, 양식방법, 양식환경, 양식품종에 따라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(안 별표3 신설)

나. 어장정화·정비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변경등록 예외규정 신설(안 별표1)

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선박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 한하여 다른 어장정화·정비 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

다. 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선박의 선박검사 관련 사항 명확화(안 별표1)

이 법에 따라 어장정화·정비업에 등록하는 선박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은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르도록 명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3년마다 1회 이상”을 “별표3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청소 실시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해양수산부장관(법 제26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면허·허가 동시갱신에 관한 사무
2. 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 관한 사무
3. 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

별표 1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
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어장정화·정비업에 등록하는 선박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은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른다.

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장정화·정비업자가 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선박을 선박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없이 임차하여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사업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.

가. 어장정화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,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 선박 외에 추가적인 선박 투입이 필요한 경우

나. 어장정화·정비 중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여 대체 선박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(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)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. 다만, 별표1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어장관리법 시행령 [별표 3]

양식면허의 종류 · 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(제12조 관련)

면허의 종류	양식방법	양식환경	양식품종	주기	시설물	청소방법
해조류 양식업	수하식 (지주망식)	조간대	김, 매생이 등	5년	대나무, 지주, 밧줄 등	인력, 인양장비 (정화선, 굴삭기, 관리선 등)
	수하식 (부류망식)	조하대	김 등	4년	뜸, 밧줄, 그물, 닢 등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형망장비(형망선)
	수하식 (연승식)	조하대	미역, 다시마, 톳, 모자반 등	4년	뜸, 밧줄, 닢 등	
	바닥식 (투석식)	조간대	김, 파래 등	5년	돌 등	인력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, 굴삭기 등)
패류 양식업	가두리식	조하대	전복 등	4년	뜸, 밧줄, 가두리, 그물, 닢 등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펌프식 준설선 (수처리선 포함)
	수하식 (연승식)	조하대	굴, 담치, 참가리비, 해만가리비 등	4년	뜸, 밧줄, 닢, 채롱 등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형망장비(형망선)
	바닥식 (살포식)	조간대	바지락, 꼬막, 가무락, 백합, 동죽 등	5년	모래, 대나무 등	인력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, 굴삭기 등)
		조하대	바지락, 피조개, 새조개,	4년	밧줄, 그물, 닢 등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

			키조개 새꼬막 등			형망장비(형망선)
	바닥식 (투석식)	조간대	굴 등	5년	돌 등	인력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, 굴삭기 등)
		조하대	전복 등	5년	돌 등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
어류등 양식업	가두리식	조하대	조피볼락, 돔류, 농어, 귀치, 복어류, 능성어류, 방어, 고등어, 민어 등	3년	뜸, बाट줄, 가두리, 그물, 닷 등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펌프식 준설선 (수처리선 포함)
	수하식 (연승식)	조하대	우렁챙이, 미더덕, 오만둥이 등	4년	뜸, 지주, बाट줄, 그물, 닷 등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, 형망장비(형망선)
	바닥식 (투석식)	조하대	해삼 등	5년	돌 등	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 등)
마을 어업	해조류양식업, 패류양식업, 어류등양식업 기준에 따라 진행					인력, 잠수, 인양장비 (정화선, 관리선, 굴삭기 등)
복합 양식업 및 협동 양식업	해조류양식업, 패류양식업, 어류등양식업 기준에 따라 진행					

비 고

1. 어장청소를 실시하는 자는 양식환경(조간대, 조하대), 암반, 인공어초, 해저케이블 등 어장의 저질상태, 어장 인근 취수 시설, 어업순기 및 철거·이설 여건을 고

려하여 청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
2. 위 청소방법 중 펌프식 준설선을 이용하여 어장을 청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(「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해저퇴적물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2회 이상 4등급을 받은 어장)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·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.
3.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, 청소주기는 선택 가능한 주기 중 단기에 따르며, 청소방법은 해당하는 복수 방법 중 비고 1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어장청소 등) ① 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·처리(이하 “어장청소”라 한다)하여야 하고,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<u>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·정비를 하였거나,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</u>	제12조(어장청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3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-----</u> . <u><단서 삭제></u>
②·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</u>

<신 설>

항에 따른 어장청소 실시 결과를
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
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취합하
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
여야 한다.

제14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해양수산부장관
(법 제26조 및 이 영 제14조에
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
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
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
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
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
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
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
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
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
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면허·허가
동시갱신에 관한 사무
2. 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
관한 사무
3. 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
· 정비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39